

## 1

## 근거 규정

-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(제404조제1항)에 따라 회원의 거래소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감리할 수 있으며,
  - 감리 결과 그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(제22조제1항)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
## 2

## 위반 내용

- 메릴린치증권은 '17년 10월 ~ '18년 5월 중 위탁자(C사)로부터 430개 종목에서 모두 6,220회(900만주, 847억원)의 허수성주문(시장감시규정 제4조제1항제5호)을 수탁\*하여,
  - 시장감시규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음

## 3

## 제재 내용

- 회원에 대한 제재 : 회원제재금 1억 7천 5백만원 부과
  - 임직원에 대한 조치 : 회원 자율조치 후 위원회 통보

## 4

## 주요 특징

- 해당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하여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

- 개별 매매양태를 살펴보면, 우선 ①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하여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, 그 다음 ②보유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, ③既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며, 그리고 ④일련의 ①~③의 행위를 반복하였음

※ (참 조) 관련 법령 및 규정

【 자본시장법 】

제404조(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)

-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(...)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,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·재산상황·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.
- 2.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【 시장감시규정 】

제22조(회원에 대한 징계 등)

- ① 위원회는 회원이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- 2. 10억원 이하 1,0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의 부과

제4조(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)

- ① 회원 또는 그 임원·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평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
- ③ 회원 또는 그 임원·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## 1

## 감리 실시

- (감리예고통보) 메릴린치증권에 위탁자\*의 허수성주문 수탁\*\* 관련  
감리예고 통보('17.11.20 1차 통보, '18.5.29 再 통보)
  - \* 해당 위탁자(외국계 헤지펀드 C사)는 메릴린치증권(서울지점)에 계좌 개설('17.9월)
  - \*\* 허수성주문 수탁기간 : '17.10월 ~ '18.5월 (약 8개월)
- (감리 착수) 해당 위탁자 계좌의 주문 및 매매 분석\*('18.6월~9월)
  - \* 해당 계좌의 주문이 시장감시규정의 허수성주문에 해당하는지 등 파악
- (실지감리) 메릴린치증권(서울지점)에 출장하여 감리 실시('18.10월)
- (감리 완료) 141일 동안 6,220회 허수성주문 수탁 사실 적발('18.12월)
  - ※ (매매심리) 해당 위탁자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매매심리를 완료하고,  
심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였음('19.6.18)

## 2

## 제재 절차

- (규율위원회 심의) 총 3차례 회의('19.1월~4월) 개최를 통하여 위반  
내용 및 제재 수준 등 심의 완료(4.5)
- (시장감시위원회 의결) 총 4차례 회의('19.4월~7월) 개최를 통하여  
메릴린치증권에 회원제재금 부과로 최종 의결(7.16)